

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5] <신설 2024. 8. 6.>
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 기준

(제29조의7제2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.
- 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다.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(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 기준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	법 제36조의6 제1항제1호	지정취소		
나. 법 제36조의5제5항 및 이 규칙 제29조의6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	법 제36조의6 제1항제2호	시정명령 2개월	지정취소	
다.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6조의5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36조의6 제1항제3호	시정명령 2개월	지정취소	
라. 법 제36조의5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	법 제36조의6 제1항제4호	시정명령 2개월	시정명령 2개월	지정취소